

## 국·공립대학 재정지원정책의 회고와 발전방향



신철순  
전북대 총장

### I. 서론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력 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주로 대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질적인 개선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통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그 초점이 주어져 교육지원정책도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정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국가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 수준은 아직도 낮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양적인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1980년 교육대학을 포함 32개였던 국·공립대학이 2001년에는 48개(산업대 및 방송대 포함)로 늘었으며, 재적 학생 수도 1980년 134,192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860,855명으로 50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여건은 오히려 악화된 상태이다.

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정지원이다. 차제에 국·공립대학의 지원정책의 회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4년제 국립 정규대학의 재정지원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 II. 국·공립대학교 재정지원의 현황과 변화추이

국가가 국·공립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



기본법 제 7조 제 1항과 제 2항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법제화하고 있으나, 대학재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 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동법 제 8조에서는 대학의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등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역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태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한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는 대학교육이 지니는 가치재적 성격과 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많은 선진국들이 보통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음은 대학교육이 지니는 외부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의 대학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의 개념이 없었다. 그간 국가는 주로 학생 정원 조정권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시하고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1992년의 학과평가 인정제도와 1994년의 대학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별 차등지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정지원 사업인 국책공대 지원사업,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사업 및 자구노력 지원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 대학정원 및 학사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1995년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

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등을 포함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을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 정책에 따라 대학 지원 예산이 1996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이 증가한 10,597억 원이 확보되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때에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사업, 국책공대,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 등 주로 특수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국·공립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7년에는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과 산업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이, 1999년에는 BK21 사업이, 2000년 이후에는 국립대 구조조정과 발전계획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첫째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의 국·공립대학 운영경비지원, 둘째 사업 목적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은 있으나 대학 모두가 대상이 되어 균등하게 지원되는 일반지원, 셋째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이다(송기창, 2000).

일반지원사업 중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지원과 국립대학 이전 및 시설비 지원을 빼면 나머지 사업은 평가에 의한 지원사업과 차관사업, 그리고 규모가 작은 몇 개의 사업뿐이다. 따라서 일반지원사업은 종류는 많지만, 대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관심을 받는 사업은 평가와 연계된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자구노력) 지원사업, 국립·사립대 시설·설비확충 지원사업,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이다.

〈표 1〉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지원 예산(전문대 제외)

(단위 : 억 원)

연도별	'97	'98	'99	'00	'01	'02(안)
교육예산	183,876	174,861	179,029	197,255	215,828	223,250
대학교육예산	19,042	17,113	20,069	21,801	22,946	25,202
비율(%)	10.4	9.8	11.2	11.1	10.6	11.3

자료 : 국회 교육위, "200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표 2〉 GDP 대비 정부 교육 예산 지출 비율

(단위 : %)

구분	한국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1999	4.4	0.5	6.3	1.7	6.5	1.1	5.8	1.0	4.5	1.0	3.6	0.5	5.2	1.4	5.4	1.2
1990	-	-	6.4	-	6.4	-	5.6	-	-	-	4.7	-	-	-	5.7	-

자료 : OECD, *Education a Glance 2000*, Table B1.1a, Table B1.1c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13호, p.70

일반지원사업 중 평가를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은 대개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대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아 개별 대학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지원사업 중 대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한 대학 지원금의 그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최근 몇 년 동안의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지원 예산의 비율과 규모를 보면 〈표 1〉과 같다. 2002년도 대학 부문에 대한 국고지원은 총 2조 5,202억 원(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포함)으로 작년보다 2,256억 원(9.8%)이 증액된 규모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사학에 대한 지원분을 제외하면,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1980년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지원액 1,200억

과 1990년도의 4,500억 정도와 비교하면 최근의 고등교육 예산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에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학교육 예산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 데다가 대학지원금도 적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2000학년도 세출 비용은 19억 246만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금년도 대학교육 예산 총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정부의 GDP 대비 교육 예산 비율과 그중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서구 선진국의 교육 예산이 GDP 대비 5~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4%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비는 선진국의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거국적인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 대학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1
과제·액수	설립					
지원과제 수	국·공립	881	766	1,387	1,796	820
	사립	819	750	1,715	1,801	1,489
지원 금액	국·공립	2,263	1,958	8,434	18,513	22,880
	사립	1,457	1,455	8,545	19,797	36,174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80~2001

둘째는 대학별 국고보조금이다. 이 정책은 '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일환으로 대학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특성화대학을 키운다는 취지로 시행된 사업이다. '94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국립대학교 지원 상황을 보면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학생 수에서 거의 규모가 큰 대학들이 지원을 받아 다른 교육인적자원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금독식 현상이 두드러진 측면이 있었고, '대학자구노력 지원사업'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에 대한 지원금이 월등히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자구노력예산은 해가 갈수록 원래 취지에서 상당 부분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 재정지원사업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금으로 바뀌어 1999년부터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특수목적지원사업 정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은 ①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② 지방대 특성화 사업(종료), ③ 국책공대 중점지원사업(종료), ④ 국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종료), ⑤ 국책 이공계 지원사업, ⑥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지원사업, ⑦ 이공계 대학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 ⑧ 국립대 구조조정사업, ⑨ 두뇌한국21(BK21)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 정책은 일부 심사기준과 선정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은 데다 선정 대학이 기존 대학에 집중되는 등 편중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규모별로 제한하여 심사하는 것, 동일 분야 3회 이상 선정 대학의 경우 타 분야 참여, 수도권과 지방대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의 개선점이 검토되고 있다. 아무튼 당초 교육개혁 추진 격려 차원에서 실시된 이 사업은 다른 특수목적사업과 달리 종료 시한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넷째,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지원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자. 각 대학의 학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대학 환경과 학술활동에 대응하고자 한국학술지원재단은 '99년도부터 연구비 지원사업을 변화시켜 시행해 오고 있다. 30여 가지로 난립해 있던 학술연구 단위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단독연구, 협동연구, 대학연구소, 학술단체지원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지원사업은 ①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② 학문분야별 연구과제, ③ 국제교류 지원사업, ④ 박사 후 연구과정 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학술연구비는 1980년 22억 6,300만 원에서 1990년 84억 3,4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01년 228억

8천만 원으로 20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공립 대학에서 받은 연구과제 지원 수를 보면 지원액의 증가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01년도에는 820개 연구과제를 지원 받았다.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비의 재원이 정부의 지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193개 4년제 대학의 총 연구비가 1조 1,569억으로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5억 9,710만 달러)과 스탠포드 대학(4억 1,700만 달러) 두 대학 연구비보다 적은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비 수준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III. 국·공립대학교 재정지원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1.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발전과 대학의 질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데 주목하고,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등 고등교육이 급속히 팽창하는 데 비해, 대학 교육 재정의 확충은 양적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대학교육 재정지원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정의 총량 규모가 영세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재정의 규모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 규모는 아직

도 총량 규모가 적고, 교육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총 공교육비 대비 고등교육비의 비율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1/3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OECD 선진국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흡하기 때문에 대학 제원 중 학생부담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 대학 재정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세출 면에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면 운영비와 시설비의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인 대학 재정운영을 근본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국고지원 규모가 영세하다. 국가는 국립대학의 설립자이며, 전체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초점은 보통교육에 있었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에 관한 책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등에 법제화되어 있다. 반면 대학 재정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 7조 제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간 대학 재정 확충에 국가의 노력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로 국고지원 규모도 영세한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들이 앞 다투어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면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학간 차등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대학평가가 교육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그간 각종의 대학평가는 국고지원의 효과로 대학 재정의 확충, 대학의 경쟁과 자구노력을 유발한 효과는 인정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점으로 대학평가의 공정성 미흡, 대학 선정 및 재정배분 기준의 합리성 부족, 사업 선정 및 추진과정의 비체계성, 대학의 행정업무 과중, 대학내 재정 지출의 효율성 결여, 재정지원 시기의 하반기 편중, 대응투자(matching fund) 유도의 비현실성, 대학 재정 평가제도의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8). 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대학평가 기준에 의해 전국의 대학을 서열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교육사업과 재정운영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대학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 예산편성에서 교육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쉽다. 단위교육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나 그 사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이와 관련된 비용이나 수익 또는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편익이나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의 관계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공립대학은 획일적인 조직체로 운영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대학별 특성화와 수월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과 재정 배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2.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발전방향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확충하여야 한다. 재원 확충의 시급성은 모든 대학에 해당된다. 대학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정지원의 규모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부는 대학 설립자와 수익자에게 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전체 교육 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원 구조는 등록금 및 기성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고보조는 매우 빈약한 현실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도 물론이지만, 국립대학 역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학생이 부담하는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그 설립의 주체인 만큼 국립대학에 대해서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대학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복지 관점과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하는 인력양성이라는 투자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도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별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의 대학간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립대학이라고 해도 대학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이 대학마다 천차만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간 평가에 앞서 정상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인들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보다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교육운영이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나친 경쟁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와 대학간·학문간 협동체제 마련의 저해를 방지하기

“

대학별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발전 노력과 의지가 강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학에 대해  
 먼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진정한 교육평가의 관점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경쟁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위해서는 대학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바탕 위에서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발전 노력과 의지가 강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학에 대해 먼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진정한 교육평가의 관점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경쟁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이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나아가기보다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원적인 인간을 육성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대학의 재정운용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재정운용은 재정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를 잘 운용하지 못하면 이는 큰 국고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유사한 규모를 가진 대학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재정을 가지고도 투자하는 내용이나 운용하는 방식이 매우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제도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이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대학의 재정운용에 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발전 의지와 개선노력을 보이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재정배분 기준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중요한 재정배분의 기준은 학생 수이다. 학생 수의 증가는 재정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곧 중요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대학의 재정운용에서 모든 부분이 학생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재정배분이 학생 수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대학들이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학생 수는 작지만 교육의 질이 뛰어난 우수한 대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수가 큰 대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의 재정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를 조기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립대학 예산·회계제도는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어 경직성과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립대학은 현재 국가의 비영리조직이라는 특성과 법정회계라는 틀 안에 안주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사안일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관리, 자원배분의 비형평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회계를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예산확충을 위한 지구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IV. 결 어

지난 20년간은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상 대학의 양적인 팽창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신설된 대학도 많았거니와 입학생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해 왔고, 국가 또한 교육 예산의 확충에 소홀히 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규모나 구조에 있어서 영세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많은 대학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대학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의 운영경비지원, 일반지원, 특수목적사업지원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평가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1994년도부터는 평가에 의한 지원사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의 대학교육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대학 재정 규모의 영세성, 국고지원액의 부족,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의 역기능, 교육사업과 재정운영의 연계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으로 대학 재정지원 규모의 획기적 증대, 대학별 차등지원 방식의 개선,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정배분의 기준 재조정,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정책은 미래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선진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정지원으로 대학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향적이고도 획기적인 대학 재정지원정책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도 향상되기 어려울 것이다. **■**

####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1980~2001). 『교육통계연구』.  
 김명수(1998). "국립대학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7(1).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대학교육』: 제 92호.  
 송광용 외(1998).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기창(2000).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9(2).  
 윤정일(2001). "대학재정 지원방식 개선". 『교육재정경제연구』: 10(2).  
 이재복(1999). "국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과 배분 정책". 『대학교육』: 제 97호.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1995~1998).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 신철순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교육학),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교육행정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북대 교육대학원 원장 및 사회교육연구소장, 미국 Wisconsin 대학 객원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가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교육행정학』, 『교육행정 및 경영』, 『현대 교육행정학』(공저) 등이 있다.